

수원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나841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의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숙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5. 26.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단52199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4 지분에 관하여 2014. 9. 1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43,464,46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3,464,4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2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D(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9분의 4 지분에 관하여 2014. 9. 1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464,462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7. 27. “소외인들은 각자 원고에게 215,09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C에 대해서는 2012. 2. 16.까지, D에 대해서는 2012. 6. 28.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경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526호). 원고는 또한 C를 상대로 대여금 14,376,1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1. 11. 29. 위 대여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여 2012. 1. 1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차4751호).

나. 피고와 소외인들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등

- 1) 소외인들의 아버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소외인들 등 3남매와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상속지분: 소외인들 각 2/9).
-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9. 18.경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하였다.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5. 3.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망인은 사망 전인 2005. 8. 17. F으로부터 45,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6. 5. 10. F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 4) 피고는 2016. 5. 19. G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인들의 재산상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소외인들은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과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들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각 2/9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소외인들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소외인들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사실상의 상속의 포기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 및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재산권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 공동상속인들 간의 일종의 계약인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서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불요식행위인 반면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인 점 등으로 볼 때 양자는 그 요건과 효과,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이어서 어떤 구체적 사안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들의 상속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되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이후에 G조합가 새로이 근저당권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소외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상속분은 아래와 같다.

1) 제1심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2019. 6. 2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4/9 지분의 시가는 63,464,462원[= 142,795,040원 × 4/9,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이 인정되고, 당심 변론종결일에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이후 말소되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 및 채권최고액은 45,000,000원이었으므로, 그중 소외인들의 부담 부분은 20,000,000원(= 45,000,000원 × 4/9)이다(한편 원고는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원금의 120% 이상으로 설정하므로, 망인이 F으로부터 빌린 원금은 37,5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국 소외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상속분은 43,464,462원(= 63,464,462원 - 20,000,00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43,464,46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3,464,4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는 사해행위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법 소정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욱, 판사 남기정, 판사 김태형

목 록

1. 경기도 화성시

대 372㎡

2. 경기도 화성시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49.58㎡

3. 경기도 화성시

전 236㎡

